

■ 발간등록번호 연구13-0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윤수 · 김형미 · 박민아

머 리 말

2011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관리에 근간으로 사회서비스 및 이용권의 개념과 범주의 확립, 이용자 선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제공기관의 등록 및 책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전자바우처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확대되는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2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요청과 시대적 흐름에서 사회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과 관련된 중앙과 지방의 정책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우리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필요한 책무를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제 개정에 있어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원 희 목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장 이론적 논의	5
제1절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7
제2절 기본법에 관한 주요 내용	11
제3절 기본법 제정에 관한 검토	13
제3장 이용권법 전면개정안	15
제1절 이용권법 전면개정안 방향	17
제2절 각 조문별 개정안	25
제4장 하위법령 개정안	41
제1절 전자바우처 사업운용 개선을 위한 제도 방향	43
제2절 각 조문별 개정안	44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1
부 록	103

표 목 차

<표 1>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	12
<표 2> 이용권법 현행 및 개정안 비교	19
<표 3> 입법취지 및 목적관련 개정안	25
<표 4> 용어정의관련 개정안	27
<표 5>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 설치관련 개정안	33
<표 6>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관련 개정안	35
<표 7> 사회서비스전담기관 설치관련 개정안	36
<표 8> 제공인력 교육 훈련관련 개정안	39
<표 9>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43
<표 10> 부담비용 감면절차 및 방법 규정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44
<표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례	46
<표 12> 이용권 발급 및 재발급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47
<표 1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개정안	49
<표 14> 국내 관련 법령 입법례	51
<표 15> 사회서비스 이용계약관련 시행규칙 개정안(1안)	53
<표 16> 사회서비스 이용계약관련 시행규칙 개정안(2안)	54
<표 17>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	55
<표 18> 국내 관련 법령 입법례	58
<표 19> 제공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등록 및 변경 신고 시행규칙 개정안	60
<표 20>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62
<표 21> 개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	63
<표 22>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64

<표 23> 개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65

<표 24>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66

<표 25> 개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67

<표 26> 제공인력 현황 68

<표 27> 제공인력 변경 현황 69

<표 28> 사업별 제공인력 급여등록 현황 70

<표 29> 국내 관련 법령 입법례 72

<표 30>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74

<표 31> 업무프로세스 개선(안) 76

<표 32> 국내 입법례 조문 참조 78

<표 33>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관련 개정안(1안) 80

<표 34>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관련 개정안(1안) 81

<표 35> 장관고시 및 시행세칙 내용 85

<표 36> 동경도의 제3자 평가방식 86

<표 37> 독일 품질관리 특징 87

<표 38> 미국 품질관리 특징 88

<표 39> 평가기준·방법·절차 관련 제1안 입법례 91

<표 40> 평가기준·방법·절차 관련 제2안 입법례 93

요약

1. 연구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이하 이용권법) 시행이후 발생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고시 및 시스템 운용 등 개선 사항 제안
-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사회서비스사업 현안 및 이슈 조사
 - 새로운 사업기획, 사업운영, 사후 품질관리 등 각 업무 프로세스 및 영역별 현안 및 이슈사항 분석
 - 현행 법 및 제도, 전달체계, 관리방식상의 이슈 및 문제점 도출

2. 이용권법 전면개정(안) 내용

-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여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현행법의 사회서비스 범주로 국한된다면 법제도하의 규정범위가 적어 복지부 사업 외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정의가 필요하며,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함
 - 관련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가 정리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 시행초기 제도의 원활한 출범에 보다 비중을 두고 추진됨으로써, 중장기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함
 - 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 및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타 부처와의 연계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안)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에서의 사회서비스 내용 및 범주에 대한 내용, 서비스를 생산하는 제공기관의 권리와 의무, 이 서비스들에 대한 관리체계,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칙에서는 법률을 만들게 된 목적, 이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들에 대한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의, 국가와 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전체 6장으로 구성하며, 1장에서는 정의 부문에서 사회서비스 범위를 규정하고, 2장에서는 사회서비스관리체계를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와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제공인력의 교육 및 훈련은 4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관한 장으로 이동하였음

3. (시행규칙) 부담비용 감면절차 및 방법 규정 개선

□ 필요성

-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이외에도 도서·벽지·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비용부담 감면 규정 필요
 - 현실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운명을 실시하여 거의 실익이 없고, 제도 운영 후 도서·벽지·농어촌의 이용자 비용부담이 현실적으로 급여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법제6조제2항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사건”을 의미하므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토록 함

□ 개정방향

-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자격을 가진 이용자의 소득, 생활수준, 지역적 특성,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필요
-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제2항에서는 천재지변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람으로 구체화 필요
-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제3항에서는 감면금액 뿐만 아니라 감면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고시 필요

4.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후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이 전담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 방법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정발급 통지서가 시행규칙 제21조 공통서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본인부담금과 제공기관만을 안내하고 있어 서비스의 종류, 유효기간 등 서식 변경 필요

□ 개정방향

-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 절차를 추가하여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명시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의 서식 내용 상세화

□ 규정할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은 전담기구가 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결정 후 시·군·구청장이 전담기구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권 재발급 시에도 시·군·구청장이 전담기구에 재발급 통보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에 사회서비스 종류, 개시일, 유효기간 등을 추가하고 서식 개정(개정안)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에 관한 규정 명시

5.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계약 등

□ 필요성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와 제공기관 사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 행위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계획서, 계약서 등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에 대한 규정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기초자료에 대한 규정의 미흡으로 제공기관의 자료요구 및 자료 확보가 어려워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한계 존재

□ 개정방향

- (제1안) 계약행위와 제공기관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식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 등에 위임
- (제2안) 제1안의 내용에 계약행위 이전에 이용자 확인에 필요한 절차, 계약서의 상세 내용에 대해 규정 추가

□ 규정할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용을 위한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에 사회서비스 이용 계약 규정
- 계약 체결에 따르는 제공기관이 제공할 서식 규정
-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계약일, 서비스종류, 횟수,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인력 등) 서비스 제공계획서 서식 추가 및 전담기구에 통보의무 규정 추가

6. (시행규칙) 제공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등록 및 변경 신고

□ 현황 및 문제점

- 제공인력 입·퇴사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13년5월 급여등록율 64.8%로 저조
- 제공기관 등록제 업무의 핵심은 제공인력 관리이므로 제공기관 등록 이후 기관 당 법정 제공인력 정수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
 - 그러나 이용권 법령에 인력변경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등록이후 제공인력 현황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공인력 정수 미 충족 기관관리, 제공인력 인적정보 관리, 통계관리 등 제공기관 관리상 문제 발생

□ 개정방향

- 시행규칙으로 제공기관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행력 강화

□ 규정할 내용

-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유에 제공인력변경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 신고서식 개정
- 변경신고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설정
- 지자체 및 제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인력변경 신고는 전담기구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하도록 규정
- 변경신고 사항 확인업무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규정 적용

7.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전자바우처 방식은 전자결제(단말기, 인터넷, ARS)시 별도의 심사 없이 제공기관이 청구(결제)한 비용을 전액 지급하고, 사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 의심 건을 사후적으로 관리
 - 부정결제 의심 건에 대한 사전심사 과정 미비로 인해 부정결제 사전예방 및 원천적 차단에 일정한 관리상 한계 발생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될 소지 다분

- * '12년에 제공기관 6,982개소 중 631개소 만 이상결제 심사 및 관리
- * '11~'12년 환수금액은 1.5억~2.4억원으로 예산대비 0.02~0.03%에 불과
- 서비스현장의 부정사용 수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상황이나 제도상 한계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및 한계점 존재
 - 단기적으로는 법·제도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담기구의 질문·조사권 명문화, 심사관리 전담 조직 설치 등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개정 방향

- 단기대책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 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절차를 강화
 - 심야결제, 중복결제 등 부정결제 의심 건에 대한 제공기관 소명 등 사전 확인(심사) 절차를 마련
- 중장기대책
 - (통계 및 비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FDS(부정사용방지) 시스템 도입을 통한 모니터링 과학화를 통해 부정결제 유형을 추출, 부정결제 의심건에 대해 적극적 관리체계로 전환
 - 부정방지시스템 구축, 심사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서비스 사후관리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규정할 내용

- (방향) 전자결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용 청구(결제) 내용을 부정결제 의심이 없는 '정상결제'건과 부정결제 의심이 있는 '이상결제'건으로 구분
 - 정상결제 건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사 절차 없이 비용지급하고 개별적으로 사후관리 진행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상결제 건은 지급보류 후 사전 심사(소명)과정을 거쳐 관리
- (절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한 전담기구의 자료제출 요구권, 현지 심사권 등 부여
- 기타 결제비용 심사·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시 위임하고 구체적 심사 절차, 내용 등은 전담기구의 장이 세칙으로 정함

8.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의 내용·방법·절차 등

□ 필요성

-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방법·절차 등 명확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제도 수용도 및 품질제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포괄주의 수가 하에서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
- 품질평가 결과 공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행사를 지원 ... 당사자 계약주의
 - 특성화된 평가 결과의 정보공표를 통해 1차적으로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선택 정보를, 사업자에게는 타 기관과의 경쟁요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우수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유인
- 기관 간 평가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유지가 필요하며 이용자, 제공기관, 정부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바, 평가위원회 구성 등 객관적 장치가 필요

□ 문제점

- 법 제30조3항에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방법·절차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으나,
 - 평가 주기와 평가기준 만을 정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체계적 수행과 평가의 공정성·수용성 확보 미흡

⇒ 평가 방법,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단계별로 규정

□ 규정할 내용

- 사회서비스 업무와 제공기관 평가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법령상 평가 기관인 전담기관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에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심의, 평가결과 공개범위 결정 등의 권한 부여 통해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 수행
 - 정기평가는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 차원에서 외부전문가 등 활용하여 수행
 -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기관의 서비스 수준 유지여부 확인 및 노인 학대, 부정청구 등 민원다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지자체 공무원과 전담기관 직원 중심으로 평가팀 구성·운영
- 평가결과 활용
 -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방향과 연계하되, 우수기관 선 공표 후 전체 평가기관 순위 공표 등 단계적으로 접근
- 세부사항 고시 등 위임
 - 적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하고, 평가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전담기관이 세칙으로 정하도록 단계별 위임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이하 이용권법) 시행초기 제도의 원활한 출범에 보다 비중을 두고 추진됨으로써, 중장기 발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등 미비한 상태
 - 법 시행 이후 기관등록 연계, 사업평가의 관리요소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과 제도화 실행전략 미흡

- 제도 시행이후 발생한 사업관리상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 고시 및 시스템 운용 검토 등 제도 분석 및 제안
 - 제도의 기본법령과 같은 본질적 개선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운영적 측면에서 운영절차 및 집행사항 개선을 위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적 제안을 통해 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 제안
 - 환경 및 전략목표 점검, 프로세스 현황 분석을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내 기초자료 실태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면접 등을 통해 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 한국보건복지개발원 사회서비스본부의 중장기 기능 및 역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자료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수록
 - 바우처시스템 중장기 전략(BPR/ISP)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의 관점에서 제도운영의 객관성 및 공공성 고양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정책 이슈 분석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보건복지전달체계분석을 통해 전자바우처 운영시 부정·중복 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바우처사업 추진방향 제시

- 정책집행과정상 변화된 일선의 업무개선 필요사항 등 운영 이슈
 - 사업기획, 사업운영, 사후 서비스 품질관리 등 각 업무과정 현안분석
 - 현행 법 및 제도, 전달체계, 관리방식상의 이슈 및 문제점 도출
 - 통합업무프로세스 체계수립(신청, 조사, 결정, 급여 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관련 이슈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제도 신설 및 개선 대상 영역
 - 서비스·카드 신청, 결제, 자금 수납 및 지급 등 바우처 사업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 분석
 - 제공기관등록 변경신고 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비용 사전·사후 관리 등 적정급여 관리
 - 사회서비스 부당지급 급여에 대한 조사 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기준 및 제공범위

이론적 논의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기본법에 관한 주요내용
3. 기본법 제정에 관한 검토사항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는 2006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혁신단을 설치하여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였음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안정화 및 활성화는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와 관련된 국가적 노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 제도의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제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통하여 바우처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기존의 복지관련 법률과 운용원리 및 성격이 상이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우르는 독립법 제정이 필요함

- 정부의 법적 권한과 책무를 밝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사회서비스의 법적 성격 및 내용
 - － 정부의 책무와 권한
 - － 사회서비스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강제 및 처벌 조항

2. 현재 관련법령의 한계

1)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련 법령의 한계

-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이 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한정되는 반면,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보건의료, 교육, 문화 서비스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정부재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 법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정부재정사업 외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방식의 사업까지 포괄 가능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큰 특징인 이용자 지원 방식과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지원법 마련이 필요함

2) 기타 금융서비스 관련 법률 적용의 한계

- 사회서비스바우처는 제3의 복지급여수단으로서, 양도불가, 구매서비스 및 사용금액 특정, 짧은 사용기한 등 여신종합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관련 법률과 운용원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인 바우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발급, 사용, 정산과 관련된 권리 및 책임, 바우처 관련 분쟁해결 절차, 부정사용 방지,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의 정비

- 법의 목적 : 사회서비스 확대의 당위성 및 바우처 제도의 합리성 등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사회서비스법의 제정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목적, 방향, 서비스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등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담는 법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서비스의 신청, 지방정부의 자격심사 절차와 기준, 서비스 비용의 지불,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지불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접근과 서비스 제공 절차를 담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관한법률로 흡수 통합되고, 현재 공공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

-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서비스 최저기준,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제공기관의 평가, 제공기관의 퇴출, 제공인력의 자격,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제공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담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

- 개정에서 서술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는 수단중심의 정의의 이중 구조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점을 관련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개정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가 정리되어야 할 것임

제2절 기본법에 관한 주요 내용

1. 개념

-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은 다음의 경우가 존재
 - － 하나는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
 - － 다음으로 주로 국정의 중요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시하는 법률의 경우
 - － 또한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과 같이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2. 유형 및 특징

- 기본법의 유형은 기본법의 성격과 효력범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남(박영도, 2006: 19-20)
- 기본법의 성격에 따라 이념형, 정책형, 대책형, 개혁추진형으로 분류함

〈표 1〉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

유형	내용	사례
이념형 (선언형)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정하는 것 해당 분야에서의 기본법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이념을 제시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정책형	각각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 방향·대강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 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것	농업·농촌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대책형	일정한 행정상 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혁추진형	국정상의 중요과제로 되어 있는 특정개혁을 확실히 추 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형식을 사용한 것으로서 개혁의 기본이념·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스스로 그 개혁의 프 로그램을 정하거나 개 추진을 위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 는 점이 특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 기본법의 특징에 대해서는 규정적 특징과 법 형식상의 특징이 존재
 - － 먼저 규정적 특징으로는 원칙적으로 내용의 포괄성·추상성, 다수의 프
로그램적 또는 훈시적 규정,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거
의 없음
 - － 조직법적 색채가 강함, 간접적 재판규범성,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지침
의 기능 등을 들 수 있음
- 그리고 법형식상의 특징으로는 이념,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방식 책무 등
에 관한 총칙적 사항, 시책의 메뉴 등 시책의 추진체제를 그 기본적인 구
성요소·내용으로 하는 것임

제3절 기본법 제정에 관한 검토

1. 기본법 유형의 선택

-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 및 기본적 추진체계,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 메시지 발신기능 등을 수행할 것임

- 사회서비스 기본법은 기본법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념형, 정책형, 대책형, 개혁추진형의 모든 성격을 가지겠지만 이념형에 더 큰 비중을 두어져야 함
 - － 왜냐하면 기본법과 이를 구체화하는 법은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그 규범영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 － 즉 사회서비스 기본법은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운영 목적·유형에 따라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2. 기본법의 기본 모형안

1) 사회서비스바우처 기본법

- 바우처의 법적 성격 명확화
 - －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련 상용되는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
 - － 사회서비스 서비스 제공내용
 - － 현물·현금 급여 비교를 통한 바우처의 성격 규정
 - － 다른 지불수단의 규율방식 비교 분석(신용/선불카드, 상품권 등)

- 사회서비스바우처의 관리 및 진흥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관계 정립
 - 바우처 관리기관의 설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자의 요건, 인증(또는 지정), 역할, 책임 등
 - 사회서비스바우처 수수료 및 본인부담에 대한 규정

2)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하위법령

-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 세부 절차 및 방법 관련 내용 등이 포함

제 3 장

이용권법 전면 개정안

1. 이용권법 전면개정안 방향
2. 각 조문별 개정안

제3장 이용권법 전면개정안

제1절 이용권법 전면개정안 방향

1. 개정안 목적

- 초기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은 해가 거듭되면서 기관등록 연계, 사업평가의 관리요소 부재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
- 전자바우처의 공급 확대 및 수요 촉진을 통해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전자바우처의 이용범위, 이용절차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 규정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따라서 향후 국내 전자바우처 관련 사업 진행시 안정적 법질서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조례, 규칙에 대한 문헌 조사 및 분석 실시
- 제도 시행이후 발생된 사업관리상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 고시 및 시스템 운용 검토 등 제도적 분석 및 제안
 - 1안으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적 제안을 통해 우리원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안으로는 제도의 기본법령의 본질적 개선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운영적 측면에서 일련의 운영절차 및 집행사항 수정

2. 법률안 목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에서의 사회서비스 내용 및 범주에 대한 내용, 서비스를 생산하는 제공기관의 권리와 의무, 이 서비스들에 대한 관리체계,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칙에서는 법률을 만들게 된 목적, 이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들에 대한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의, 국가와 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전체 6장으로 구성, 1장에서는 정의 부문에서 사회서비스 범위를 규정하고, 2장에서는 사회서비스관리체계를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와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제공인력의 교육 및 훈련은 4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관한 장으로 이동

- 아래의 표에서는 2장 이후 사항에 대하여 각 조항제목을 기술하였음.

〈표 2〉 이용권법 현행 및 개정안 비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6조 이용자의 비용 부담 제7조 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제8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사회서비스관리체계
	제5조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 제6조 사회서비스제공계획 제7조 이용자의 비용부담 제8조 사회서비스의 차등지원 제9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10조 실태조사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3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2조 이의신청 제1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14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5조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 제12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1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4조 이의신청 제15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1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7조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4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16조 제공자 등록 제17조 결격사유 제18조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19조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20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22조 제공자의 지위승계 제23조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24조 청문 제25조 과징금처분	제18조 제공기관 등록 제19조 제공기관 결격사유 제20조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제21조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제22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24조 제공기관의 지위승계 제25조 제공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 청문 제27조 과징금 처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개정안
제26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8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9조 제공인력의 교육 및 훈련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5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 조성
제27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제28조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제29조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30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31조 교육과 훈련	제30조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의 설치 제3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제32조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제33조 사업자에 관한 정보제공 제34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 비밀누설 금지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 보고 및 검사 제36조 비밀누설 금지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3. 쟁점 검토사항

1) 법 취지

- 이용권이 왜 좋은 것인지? 전자바우처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면에서 사회서비스 사업계획이 요구되고 협의 운영 필요
 - － 법률안은 바우처 사업의 '현재 상황'을 구체화하여야 하는 것인지 '미래 상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
 - － 본 법은 서비스의 실체를 담기 보다는 전달방식의 TOOL적인 사항이라는 면에서 절차법에 가까움

2) 사회서비스 내용 및 범위

- 현재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의 여부에 따라 범위의 탄력가능
 - 다만 복지부의 지향하는 정책방향에서 운용되고 있는 바우처 각 사안들을 법에 대입하여 적용분석 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범위에서 법률의 모든 활동에 의료보호도 포함되므로 법적 충돌 문제 고려
-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해 차라리 대상을 줄여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임
 - 예를 들면 신용카드관리법은 다른 부처의 실제 내용을 다 규율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용권법에서는 전 부처의 사회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기 보다 보건복지부 내의 업무만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법률의 범위 자체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취지이므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는 것을 제안

3) 관리체계(전담기관 등)

- 보건복지부의 다른 부처도 함께 참여하도록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 참여(서비스의 질관리 기능부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특수법인화는 서비스 질적 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여하여야 하는 논거 필요
 - 개발원의 임원 임기가 정관 사항인지 법률사항인지에 대한 고려
 - 개발원의 기능이 질적 평가까지는 능력 부족

- 특별법의 법인관계에 있어서 등기할 필요성은 없으나 분사무소의 경우는 설립등기가 필요함
- 개발원의 업무 중 발급과 관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여야 함.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권자의 범위 등 발급에 대한 신청기준이 위임되어야 함

4) 이용 및 이용자 보호

- 현재 이용권법은 사회 전 계층에 해당되는지 일부계층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호함
 - 예를 들면 의료급여법은 '수급권자'라 하여 수급자가 명시되어 있어 수급권자의 급여의 내용이 명시됨
 - 기초생활보장법과 중복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보충사항인지 확대하여 넓게 보려는 것인지 명확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법률 적용 대상과 범위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려
- 부정한 사용에 대하여 남용을 못하도록 장치 마련 필요
 - 도덕적 해이방지 등 의료급여의 남용
 - 이용자와 비용지급자와 일치하지 않을 때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문제 제기
-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성 부각
 - 익명의 통계목적 개인정보를 계량적으로 이용 문구의 적합성 여부 고려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는 엄격하게 적용 바람직

5)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여러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여야 함
 - 법 제정 목적을 고려해서 바우처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기관간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한데 이는 타 제도보다 효율적인 방식임

-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야 함
 - '이용권의 판매 양도를 누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이 명료하여야 함. 또한 수수료의 부담을 제공기관, 이용자 누구에게 귀책할 것인지가 불명료함

- 서비스 제공계약의 양자 간의 관계(계약관계) 수급자와 공급자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제공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 및 징수사항(3조의 적용범위)

- 바우처 제도 활성화 후에 나타날 문제 고려(신규서비스 가격 적정화)
 - 바우처의 가격이 아닌 가격에 따른 서비스 형성

6) 기반조성

- 의료법에서 품질관리를 명시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 품질관리의 업무위탁은 자칫 2원화 구조로 변경가능
 -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

- 기타 관리요소
 - 수수료 징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가맹점 혹은 시장·군수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함

- 이용권은 기명채권이지만 카드는 무기명 채권이어서 대리사용과 특정인에 대한 권한 명시
- 이용권 표면에 주민번호 기입은 대체 형태로 할 수 있음
- 본 법률안은 신용카드의 운영과 같은 관리체계 형태가 요구됨.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손해, 분실 도난에 대한 가맹점 책임관련 근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위임입법 원칙의 모순여부와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범위의 설정이 필요함

제2절 각 조문별 개정안

1. 입법취지 및 목적

1) 개정내용

- (현 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사항
- (신설안)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사항 추가

(표 3) 입법취지 및 목적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용권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여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체계적 관리를 위함

2) 개정이유

- 개정 필요성
 - 전자바우처의 제공 및 이용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바우처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전자바우처의 오용·남용을 막고 전자바우처의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전자바우처 또는 전자바우처서비스의 기반 조성
 - － 전자바우처의 활용촉진

- 전자바우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 국민생활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
- 기타

□ 개정방향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고 체계적인 확산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공급기관의 권리와 의무 규정
- 바우처를 이용한 지원관리의 투명화 및 정책설계에 정보제공 및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

2. 바우처와 전자바우처 용어의 정의

1) 개정내용

- (현 행)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상 용어의 정의를 규정
- (신설안) 현실에 부합되는 용어로 확대 개정

(표 4) 용어정의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함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회서비스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바우처의 생성, 소멸, 제공, 비용의 지불정산,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품질관리 등 전자바우처의 운영과 처리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용어정의 명확화

2) 개정이유

□ 개정 필요성

- 사회서비스이용권과 바우처 운용방식의 주요 요소에 대한 개념 및 작동원리에 대하여 정의에서 규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 제기

- 사회서비스 이용권 주요 요소
 -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이용증서(권리), 공급자의 경쟁유도, 정부의 보조금, 본인부담금, 현물·현금급여의 혼합, 소비형태의 통제, 서비스 비용의 사후지급 등의 내용을 담음

- 전자바우처의 주요 요소
 - 전자결제(웹신청, 단말기, 카드형태-전용, 신용, 체크), 상호인증시스템, 표준화된 결제방식(포인트결제, 정액결제) 등의 내용을 구성으로 하고 있음

□ 규정할 내용

- 전자바우처 서비스
 - 전자바우처서비스란 “전자바우처를 매개로 하여 구매되는 물품 또는 제공되는 용역”
 -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의미

-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 “전자바우처 이용자”라 함은 전자바우처를 이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자로써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 이용자의 범위는 대부분 국가에서 성인(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전자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바우처 이용자가 전자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 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기관을 말함
-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은 (바우처 자체가 아니고) 바우처를 매개로 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의미하므로 "전자바우처서비스 제공자(또는 제공기관)"와 차별됨
-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서비스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관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사회서비스 사업 및 일자리 관련 홍보, 서비스 제공인력 파견 및 파견 현황 보고, 서비스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 서비스 제공내역을 월별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 서비스 제공인력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등의 역할을 함
- 시·군·구에서 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 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및 양성 능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전자바우처 관리기관

-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바우처의 생성·소멸, 제공, 비용의 지불정산,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품질관리 등 전자바우처의 운영과 처리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은 전자바우처 발행과 환급,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 공급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불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

·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금집행 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하여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사업집행실적 등을 제공하여 복지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함

○ 전자바우처의 처리

- "전자바우처의 (정보)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바우처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출력하는 행위, 전자바우처를 배달·우송·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전자바우처의 처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부지원을 해당 수혜자에게 전자급부방식(EBT : Electronic Benefits Transfer)으로 제공할 때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얻는 과정(자격심사, 수급자 결정 및 지원, 거래승인, 수급자정보, 서비스 종류와 범위, 환불 및 정산 등의 모든 정보들을 IT기술을 이용하여 처리)

○ 전자바우처 관련기관

- "전자바우처 관련기관"이라 함은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관리기관 그리고 전자바우처를 관리하는 국가 및 금융기관 등 전자바우처를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기관들을 말함
- 관련기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용자, 제공기관, 사회서비스관리기관, 전담금융기관(은행) 등으로 구성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관리기관과 전담금융기관은 서비스의 운용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함

- 전자바우처 발행기관
 - “전자바우처 발행기관”과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자바우처 발행기관은 바우처카드 등 유형의 사용도구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전자바우처 신청, 생성, 이용, 환급, 거래
 - “전자바우처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서비스 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 “전자바우처 이용”은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는 행위
 - “전자바우처 환급”이란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에서 서비스를 전부 이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일부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돌려 주는 것을 말함
 - “전자바우처 거래”란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제공받는 행위

- 고려사항
 - “전자바우처”라 함은 바우처를 전자적으로 구현하여 이용 권한이 설정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 및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전자바우처란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바우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 또는 전자문서로서 전자바우처 관리기관(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포함)이 발행, 생성한 것”

- 전자바우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 전자바우처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화제하는 증표임. 시장 또는 서비스공급자로부터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민법상 “채권”)를 보장하는 유가증권 유사의 존재임
 - 전자바우처는 기본적으로는 서비스공급자와 수요자 중심의 사적 거래이므로, 공급자와 수요자간에는 민법 또는 상법이 적용됨
 - 여기에 국가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자바우처를 관리, 통제하며, 서비스공급자를 인증·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바우처 관리에 따른 문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차별 문제 등)는 각 발생 사안에 따라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단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법관계로, 기타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3.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

1) 개정내용

- (현 행)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의 근거 조항 없음
- (신설안)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 근거 명확화

〈표 5〉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 설치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신 설>	<p>제5조(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 ①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조사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품질표준의 설정,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투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 설립 근거 명확화

2) 개정이유

□ 신설 필요성

-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는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목적으로 함

□ 규정할 내용

○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 사회서비스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음

- 사회서비스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 품질표준의 설정, 품질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투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고려사항

○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정할 사항으로는 우선 사회서비스 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범위 설정이 존재함

○ 사회서비스 전담기관과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와의 협력 및 견제·균형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이 감독관련기관들(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 사이에 행정적 이해관계가 상충할 여지가 있음¹⁾

1) 김홍범(2000.7). 은행감독과 중앙은행의 역할.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월례세미나, 35.

- 보건복지부 산하로 할 것인지 상위 조정부처 산하로 할 것인지의 지위권한 및 기관 업무운영에 있어서 타 중앙행정기관과의 중복 및 영역관할에 관한 문제 소지가 있음

4.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1) 개정내용

- (현 행)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의 직접적 근거 조항 없음
- (신설안)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업무수행 근거 명확화

〈표 6〉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신 설>	제00조(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의 방법, 절차 그 외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업무수행 근거 명확화

2) 개정이유

- 신설 필요성
 - 사회서비스 욕구수준과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공급실태 변화 추이분석을 위해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실태 분석 필요
 -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및 기초자료로 활용

5. 사회서비스전담기관

1) 개정내용

- (현 행)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 조항 없음
- (신설안) 사회서비스 전담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표 7〉 사회서비스전담기관 설치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신 설>	제00조(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활성화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의 이용권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업무 2. 사회서비스의 기준·규격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2) 개정이유

- 문제점 및 신설 필요성
 - 이 법에서의 전담기관은 국가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바우처 사업을 독자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설립된 법인임

- 앞으로 확대되어가는 바우처 사업을 관리하고, 심사 평가를 통한 바우처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는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바우처 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이라는 공익적 업무를 국가기관이 담당할 경우에는 법령상의 제약과 행정통제로 인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임
 - － 또한 바우처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는 별도의 이를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전담기구로서 특수법인의 설립이 필요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바우처 사업을 심사 평가하고, 이를 통해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공권력을 부여 받은 특수법인으로서의 설립이 필요함

□ 개정방향

- 바우처 발급·관리 및 비용지불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대행기관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전담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²⁾
-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표준화,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광정숙의원실 개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 자료집, 2009.9

- 특수법인으로서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설립규정 외에 사업, 임직원 및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 규정할 내용

- 전담기관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관계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업계획, 예산 및 회계 등에 대해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함
- 전담기관은 바우처의 지불 정산업무, 사회서비스 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교육 및 홍보 업무 등 이외에 바우처 사업자의 업무를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지정기관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함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사업자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사자의 교육 훈련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관리기관)으로 설정하고, 이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고려사항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업무의 공공성과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원의 경영을 합리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였음
- 여전히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지위를 갖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과는 다르게 임원의 임면과 직원의 지위, 이사회,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남음

6. 제공인력 교육훈련

1) 개정내용

- (현 행)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직접적 근거 조항 없음
- (신설안) 사회서비스 제공자 교육과 훈련 업무수행 근거 명확화

〈표 8〉 제공인력 교육 훈련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신 설>	제00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공자 교육 및 훈련 업무수행 근거 명확화

2) 개정이유

- 문제점 및 신설 필요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집된 인력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사업실시 이전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을 완료하여야 됨
- 규정할 내용
 - 일정한 심사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관련 교육 실시한 경험이 있고 인프라가 갖춰진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함

-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외부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위탁교육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교육훈련과정은 신규자 기본교육과 경력자 보수 교육을 구분 실시
 - 신규자의 경우는 현장실습, 서비스 이용계약 및 계획서 수립, 바우처 단말기 사용법 등이며,
 - 경력자의 보수교육은 서비스 수요여건에 맞추어 실시하며, 부득이하게 즉각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경력자의 경우 先 서비스 제공, 後 교육 실시 가능할 수도 있음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에서 교육비의 지원필요성 제기

제 4 장

하위법령 개정안

1. 전자바우처 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방향
2. 조문별 개정안

제4장 하위법령 개정안

제1절 전자바우처 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방향

1. 법률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이용권법 제34조제2항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정산, 부당이득 징수업무 제30조제2항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시점에서 시스템 및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되어야 할 법조문에 대하여 개선 요청 필요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운용중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근간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 필요

2. 주요 개정사항

〈표 9〉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구분	개정내용	개정이유
시행 규칙	(제2조) 부담비용 감면절차 및 방법 규정 개선	이용자 부담비용 대상자 기준 및 감면관련 세부절차 미비
	(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 규정 미비
	(제6조의 1) 사회서비스 이용계약 등 신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사회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직접적 근거 미비
	(제7조·제8조) 제공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등록 및 변경 신고	등록 및 변경신고서의 시설 및 인력 항목 누락, 변경사항의 전담기구 송부 등 등록제 관리에 필요한 규정 미흡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절차 규정 미비
	(제19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의 내용·방법·절차 등	평가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 평가 기준 미비

제2절 각 조문별 개정안

1. (시행규칙) 부담비용 감면절차 및 방법 규정 개선

1) 개정내용

- (현 행) 이용자 부담비용 감면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미비
- (신설안) 이용자 부담비용 대상자 기준 및 감면절차 근거 명확화

〈표 10〉 부담비용 감면절차 및 방법 규정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p>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p> <p>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제2조(부담 비용 감면절차 및 방법)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감면 금액 산정방법 감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도서·벽지·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부담 감면 규정 추가</p> <p>법 제6조제2항2호에 따라 사건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p>

2) 개정이유

□ 필요성

-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이외에도 도서·벽지·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비용부담 감면 규정 필요
 - 현실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운영을 실시하여 거의 실익이 없고, 제도 운영 후 도서·벽지·농어촌의 이용자 비용부담이 현실적으로 급여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법 제6조 제2항 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사건”을 의미하므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토록 함

□ 개정방향

-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자격을 가진 이용자의 소득, 생활 수준, 지역적 특성,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필요
-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천재지변 사유가 발생된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가 발생된 사람으로 구체화 필요
-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제3항에서는 감면금액 뿐만 아니라 감면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고시 필요

□ 규정할 내용

- 이용자 본인 부담 고시(안) 마련
 - 이용자 부담비용 감면 금액, 감면절차, 감면방법 등 명시

□ 입법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제3항제2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에 대하여 별도 금액을 정하도록 함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감경대상자, 감면절차 및 방법 명시
- * 장기요양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일정수준이하인자에 대하여 감면절차 및 방법 관리사항에 초점

(표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례

관련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및 감면절차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범률	<p>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p>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시행규칙	<p>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p> <p>제35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관련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및 감면절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1) 개정내용

- (현 행) 이용권 발급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 규정 미비
- (개정안)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에 관한 규정 명시

(표 12) 이용권 발급 및 재발급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유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20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10조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용권발급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결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결정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상세히 함 (공통서식고시 별지 제6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p><신 설></p> <p><신 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p> <p>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①항에 따라 이용권발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자격 인정 여부 2. 서비스 종류 및 내용 3. 서비스 개시일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p> <p>④ 전담기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p> <p>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기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은 전담기구가 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결정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기구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p>

<표 1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개정안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1인당 연간 2개까지의 서비스만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사회복지서비스 유형과 본인부담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가시간병 방문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 도우미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서비스개시일			
유효기간 ~		
3. ~ 6. 변경없음			

2) 개정이유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후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이 전담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 방법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정발급 통지서가 시행규칙 제21조 공통서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본인부담금과 제공기관만을 안내하고 있어 서비스의 종류, 유효기간 등 서식 변경 필요

□ 개정방향

-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 절차를 추가하여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명시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의 서식 내용 상세화

□ 규정할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은 전담기구가 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결정 후 시·군·구청장이 전담기구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권 재발급 시에도 시·군·구청장이 전담기구에 재발급 통보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에 사회서비스 종류, 개시일, 유효기간 등을 추가하고 서식 개정

□ 고려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의 서식변경은 「사회복지사업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9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등 통지서식)에 의해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에서 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의 급여기준과와 협의 후 추진이 필요

□ 입법례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표 14〉 국내 관련 법령 입법례

관련	장기요양인정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p>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p>	<p>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p>

관련	장기요양인정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p>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사항명		
시행규칙	<p>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p>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p>	<p>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p>제47조(공동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서식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2.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3. 제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갱신신청서 4. 제9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 5. 제14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 6.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신청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7.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3.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계약 등

1) 개정내용

- (현 행) 사회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직접적 근거 조항 없음
- (신설안) 제공자와 이용자간 사회서비스 이용의 근거 명확화
 - － (1안)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사회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외의 필요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표 15〉 사회서비스 이용계약관련 시행규칙 개정안(1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유
<신 설>	<p>제6조1(사회서비스 이용 계약 등)</p> <p>①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전에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로 부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p> <p>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행위 규정</p> <p>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 서식 추가</p>

－ (2안) 제1안의 내용에 이용계약 시 필요한 이용자 자격확인 및 계약내용 등을 추가

〈표 16〉 사회서비스 이용계약관련 시행규칙 개정안(2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p><신 설></p>	<p>제6조1(사회서비스 이용 계약 등)</p> <p>① 이용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또는 이용자가드(가상카드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 본인 여부 2. 이용자격 3. 서비스 유형 4. 이용자격의 유효기간 <p>③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담기구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p>④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사회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손해배상책임 등 <p>⑤ 제공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p> <p>⑦ 제공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담기구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계획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이용자 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격 및 절차 규정</p> <p>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행위 및 계약 내용 정의</p> <p>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 서식 추가</p>

〈표 17〉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② 계약자	제공기관명		제공기관등록번호			
	계약자 성명					
	이용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③ 계약 개요	계약일		서비스개시일			
	계약기간(서비스 종류별)					
④ 서비스 계약내용	서비스 종류	횟수	서비스비용		제공인력	
		월 회(시간/회)	월	원	성명	자격/면허번호
		월 회(시간/회)	월	원		
		월 회(시간/회)	월	원		
		월 회(시간/회)	월	원		
		월 회(시간/회)	월	원		
		월 회(시간/회)	월	원		
	합계		월	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1에 따라 이용자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이 계획서는 이용자와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이 계획서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 담당자 성명:		전화:		전자우편:		

(뒤쪽)

--

작성 방법

② 계약자

제공기관명과 제공기관 번호를 적습니다.

계약자(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대리인)의 성명, 이용자와의 관계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계약 개요

계약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최초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서비스개시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최초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계약기간: 서비스 종류별로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④ 서비스계약 내용

횟수: 해당 서비스의 월 제공 횟수를 적습니다.

시간: 해당 서비스의 1회당 제공 시간을 적습니다.

서비스비용: 해당 서비스의 월 서비스비용을 적습니다.

제공인력: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공인력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간호사는 면허증, 도우미는 교육이수증의 번호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두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합계: 서비스비용별 월 서비스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2) 개정이유

□ 필요성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와 제공기관 사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 행위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계획서, 계약서 등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에 대한 규정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기초자료에 대한 규정의 미흡으로 제공기관의 자료요구 및 자료확보가 어려워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한계 존재

□ 개정방향

- (제1안) 계약행위와 제공기관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식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 등에 위임
- (제2안) 제1안의 내용에 계약행위 이전에 이용자 확인에 필요한 절차, 계약서의 상세 내용에 대해 규정 추가

□ 규정할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용을 위한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에 사회서비스 이용계약 규정
- 계약 체결에 따르는 제공기관이 제공할 서식 규정
-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계약일, 서비스종류, 횟수,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인력 등) 서비스 제공계획서 서식 추가 및 전담기구에 통보의무 규정(첨가)

□ 입법례

- 장기요양급여 계약(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활동지원 급여 제공 절차 및 방법(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 18〉 국내 관련 법령 입법례

관련	장기요양급여 계약	활동지원급여 제공 절차 및 방법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p>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p>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p>	<p>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관련	장기요양급여 계약	활동지원급여 제공 절차 및 방법
	<p>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p>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p> <p>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4, 2013.6.10>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6조는 제28조로 이동 <2008.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자 본인 여부 2. 수급자격 3. 활동지원등급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p>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p>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 손해배상책임 등 <p>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4. (시행규칙) 제공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등록 및 변경 신고

1) 개정내용

- (현 행) 변경신고기간, 변경신고서의 시설 및 인력 항목 누락, 변경사항의 전담기구 송부 등 등록제 관리에 필요한 규정 미흡
- (신설안) 타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변경신고기간, 변경사항의 전담기구 송부 의무를 규정하고, 신고서 서식을 개정

〈표 19〉 제공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등록 및 변경 신고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p>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p> <p>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좌동</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인력 및 자격 내용 확인을 위한 신고서 별지 서식 변경 (별지 제1호 및 제3호)</p> <p>등록증 발급시 발급명세에 대한 전담기구 통보 의무규정 신설</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p>④ <신설></p> <p>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등록명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제공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 기관의 명칭·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법인대표자, 시설 및 인력현황 등 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전담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p> <p>2. 제공기관 등록증</p> <p>② 좌동</p> <p>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중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담기구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유에 제공인력변경 등 신고서식 개정(별지 제4호 서식)</p> <p>변경사항 신고기간 및 지자체장의 통보 규정 마련</p> <p>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인력변경 신고 규정 마련</p>

〈표 20〉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서비스 종류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 주간보호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부 사업명:)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대표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④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⑤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	
	㎡			
⑦ 자격기준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⑧ 인력기준	제공인력 _____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또는 인)</div>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 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 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확인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없 음	

〈표 22〉 현행 사회서비스 사업자 등록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사업자 등록증

1. 등록번호:
2. 기관명:
3.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
6.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표 24〉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제공자(제공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계좌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표 25〉 개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고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제공자(제공기관) 명 칭		
	[] 제공자(제공기관) 소 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u>법인대표자</u>		
	[] 지급계좌		
	[] <u>인력현황</u>		
[] <u>시설현황</u>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 80g/m ² (재활용품)]			

2) 개정이유

□ 현황 및 문제점

- 제공인력 입·퇴사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13년5월 급여등록율 64.8%로 저조

〈표 28〉 사업별 제공인력 급여등록 현황

('13.5.31 기준)

사업명	급여등록율(%)	비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5	
산모신생아도우미	72	
가사간병방문	68	
장애이동가족지원	68	
장애인활동지원	61	
계	64.8	

- 제공기관 등록제 업무의 핵심은 제공인력 관리이므로 제공기관 등록 이후 기관 당 법정 제공인력 정수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
 - 그러나 이용권 법령에 인력변경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등록이후 제공인력 현황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공인력 정수 미 충족 기관관리, 제공인력 인적정보 관리, 통계관리 등 제공기관 관리상 문제 발생
 - ※ 등록제 시행 이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P81)에서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인력정보 및 급여 등을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화 및 관리 절차 미마련으로 인해 실행력이 약화

□ 개정방향

- 시행규칙으로 제공기관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행력 강화

□ 규정할 내용

-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유에 제공인력변경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 신고서식 개정
- 변경신고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설정
- 지자체 및 제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인력변경 신고는 전담기구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하도록 규정
- 변경신고 사항 확인업무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규정 적용

□ 추진계획

- 제공기관 정보입력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시스템 개선(이동)
- '13년도 기능개선사업 반영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강화 및 미 활동 제공인력 조회화면 추가
 - 제공인력 급여등록을 향상을 위한 등록기능 편의성 개선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스캔화일) 첨부기능 추가
 - 향후 지침 변경을 고려하여 기능개선 시 제공기관 정보등록 관련 확장성을 감안한 DB 설계 반영

□ 입법례

- 제공인력 변경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대한 변경)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표 29〉 국내 관련 법령 입법례

관련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활동지원기관 변경신고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관할 시·군·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2. 활동지원기관의 명칭 3.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관련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활동지원기관 변경신고
	<p>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p> <p>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p> <p>3. 삭제</p> <p>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중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p>	<p>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 각 호의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5.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 개정내용

- (현 행) 별도의 심사 없이 제공기관이 결제한 비용을 전액 지급
- (신설안) 부정결제 의심 건에 대해 지급보류 후 사전 심사(소명)과정을 거쳐 관리

〈표 30〉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p>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p> <p>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담기구에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신 설></p>	<p>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p> <p>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담기구에 청구한다.</p> <p>② 전담기구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전담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받은 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의 사회서비스 심사 제공비용 지급 청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심야결제, 중복결제 등 부정결제 의심 건에 대한 제공기관 소명 등 사전 확인(심사) 절차를 마련</p> <p>‘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한 전담기구의 자료제출 요구권, 현지 심사권 등 부여</p>

2) 개정이유

□ 현황 및 문제점

○ 정책환경

- 최근 보유장기요양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부정 이용 문제가 언론, 국회 등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사원, 경찰 등의 사정활동이 강화되는 상황
- 사회서비스의 경우, '11~'12년 국정감사 수감시 부정수급 모니터링 인력 확보 미흡 및 부정방지책 마련 필요성 지적(전현희, 윤석용, 신의진 의원)

○ 현행 전자바우처 방식은 전자결제(단말기, 인터넷, ARS)시 별도의 심사 없이 제공기관이 청구(결제)한 비용을 전액 지급하고, 사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 의심 건을 사후적으로 관리

- 부정결제 의심 건에 대한 사전심사 과정 미비로 인해 부정결제 사전예방 및 원천적 차단에 일정한 관리상 한계 발생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될 소지 다분

* '12년에 제공기관 6,982개소 중 631개소 만 이상결제 심사 및 관리

* '11~'12년 환수금액은 1.5억~2.4억원으로 예산대비 0.02~0.03%에 불과

○ 서비스현장의 부정사용 수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상황이나 제도상 한계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및 한계점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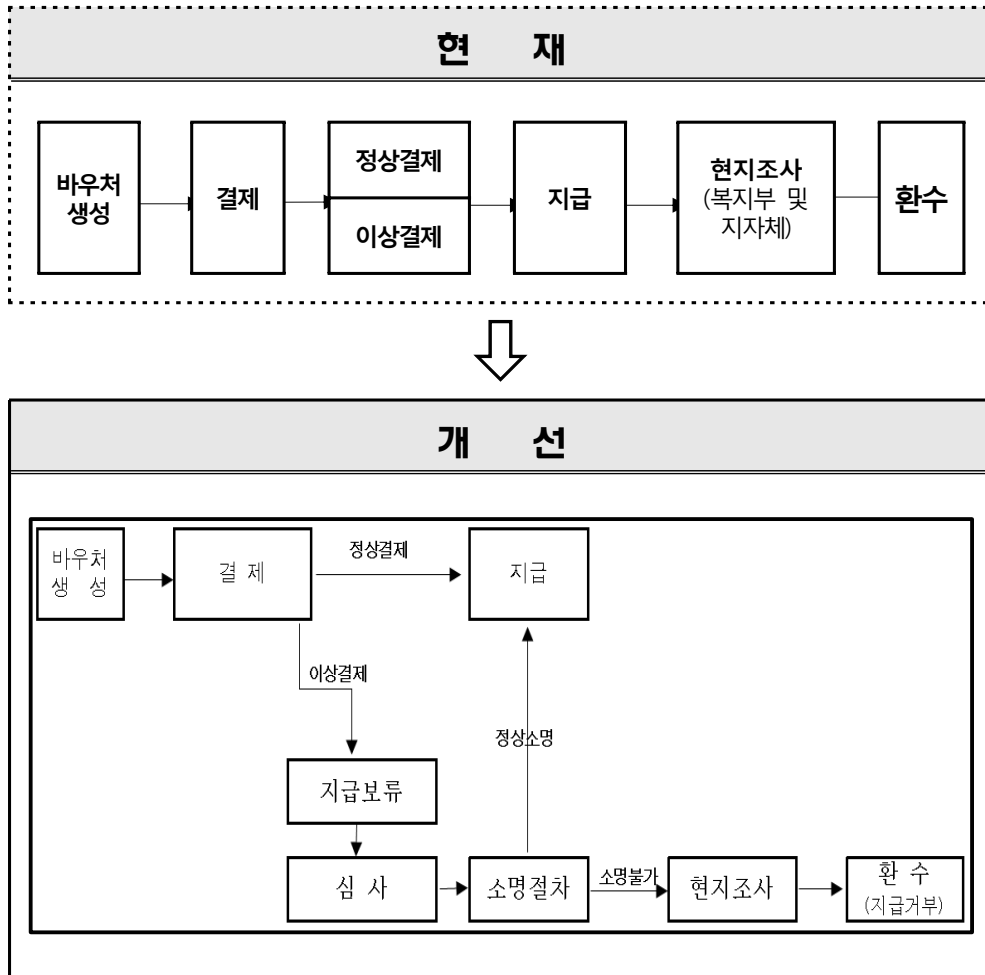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는 법·제도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담기구의 질문·조사권 명문화, 심사관리 전담조직 설치 등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개정 방향

○ 단기대책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 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절차를 강화
- 심야결제, 중복결제 등 부정결제 의심 건에 대한 제공기관 소명 등 사전 확인(심사) 절차를 마련

〈표 31〉 업무프로세스 개선(안)



○ 중장기대책

◇ 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등 가정에서 1:1로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는 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시간 부풀리기, 허위제공 등 구조적으로 부정할 방법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기가 용이

⇒ 부정방지시스템 ⊕ 현지 확인심사 및 조사 등 온라인·현장 활동의적절한 배합이 중요

- (통계 및 비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FDS(부정사용방지) 시스템 도입을 통한 모니터링 과학화를 통해 부정결제 유형을 추출, 부정결제 의심건에 대해 적극적 관리체계로 전환
- 부정방지시스템 구축, 심사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서비스 사후관리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규정할 내용

- (방향) 전자결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용 청구(결제) 내용을 부정결제 의심이 없는 '정상결제'건과 부정결제 의심이 있는 '이상결제'건으로 구분
 - 정상결제 건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사 절차 없이 비용지급하고 개별적으로 사후관리 진행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상결제 건은 지급보류 후 사전 심사(소명)과정을 거쳐 관리
- (절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한 전담기구의 자료제출 요구권, 현지심사권 등 부여
 - 기타 결제비용 심사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시 위임하고 구체적 심사 절차, 내용 등은 전담기구의 장이 세칙으로 정함

□ 추진일정

-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장관 고시, 시행세칙, 업무프로세스 및 매뉴얼 마련, 1단계 통합바우처시스템 구축 시 반영(~ '14.12월)

□ 입법례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노인장기요양법 제38조)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표 32〉 국내 입법례 조문 참조

관련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시행 규칙	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공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관련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p>단의 이사장은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1.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p> <p>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p> <p>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내역</p> <p>②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단의 이사장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공제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p> <p>2. 활동지원기관의 명칭</p> <p>3.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p> <p>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 각 호의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6.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의 내용·방법·절차 등

1) 개정내용

- (현 행) 평가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 평가 기준 미비
- (개정안)
 - (1안) 평가기준, 평가 결과의 활용 사항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표 33〉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관련 개정안(1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전담기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 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 만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 설>	제19조(품질평가 방법 등) ① 전담기구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2.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제공 절차 및 내용 3. 제공기관의 인력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제공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전담기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유형 및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안) 제1안의 내용에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장치인 평가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추가하고 적정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수시평가 근거 명시

〈표 34〉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관련 개정안(1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p>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전담기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p> <p>②전담기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 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 만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신 설></p> <p>④ <신 설></p>	<p>제19조(품질평가 방법 등) ①전담기구는 법30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만족도 2.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제공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p>②제1항에 따른 제공기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③전담기구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전담기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④전담기구는 제2항 및 제3항의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제공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p>⑤ <신 설></p>	<p>⑤ 전담기구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도 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p>	
<p>⑥ <신 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구가 승인 요청한 평가계획이 사회서비스 제공시책 등과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의 조정·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신 설></p>	<p>⑦ 전담기구의 장은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제2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평가 대상인 제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⑧ <신 설></p>	<p>⑧ 기타 제공기관 평가에 필요한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2) 개정이유

필요성

-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방법·절차 등 명확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제도 수용도 및 품질제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포괄주의 수가 하에서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
- 품질평가 결과 공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행사를 지원 ... 당사자 계약주의
 - 특성화된 평가 결과의 정보공표를 통해 1차적으로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선택 정보를, 사업자에게는 타 기관과의 경쟁요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우수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유인

- 기관 간 평가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유지가 필요하며 이용자, 제공기관, 정부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바, 평가위원회 구성 등 객관적 장치가 필요

□ 문제점

- 법 제30조3항에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방법·절차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으나, 평가 주기와 평가기준 만을 정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체계적 수행과 평가의 공정성·수용성 확보 미흡
⇒ 평가 방법,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단계별로 규정

□ 규정할 내용

- 사회서비스 업무와 제공기관 평가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법령상 평가 기관인 전담기관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에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심의, 평가결과 공개범위 결정 등의 권한 부여 통해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 수행
 - 정기평가는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 차원에서 외부전문가 등 활용 수행
 -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기관의 서비스 수준 유지여부 확인 및 노인 학대, 부정청구 등 민원다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지자체 공무원과 전담기관 직원 중심으로 평가팀 구성·운영

○ 평가결과 활용

-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방향과 연계하되, 우수기관 선 공표 후 전체 평가기관 순위 공표 등 단계적으로 접근

○ 세부사항 고시 등 위임

- 적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하고, 평가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세칙으로 정하도록 단계별 위임

* 입법례 : 장기요양기관평가(법 - 시행규칙 - 평가 고시 - 평가 세칙 - 업무처리요령)

□ 개정방향

○ (제1안) 개괄적 사항만 시행규칙에 정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 등에 위임

- (장점) 예측 불가능 사항에 대한 제도운영의 신속성 및 정책 탄력성 확보 가능
- (단점) 추상적 규정, 세부 규정 분산으로 인해 피 평가기관, 일반 국민 등이 제도 전반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제2안) 제1안의 내용에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장치인 평가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추가하고 적정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수시평가 근거 명시

- (장점) 평가제도 전반을 상세하게 법령에 기술함으로써 제공기관, 이용자의 알권리 신장과 전담기관의 사회서비스 적정관리 기반 마련
- (단점) 예측 불가능 사항에 대한 제도운영의 신속성 및 정책 탄력성 확보에 상대적 애로 발생

〈표 35〉 장관고시 및 시행세칙 내용

장관고시 규정 내용	시행세칙 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평가의 일반원칙 ○ 평가지표 ○ 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평가 신청기관 게시 등 ○ 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 평가위원회 ○ 평가자의 의무 ○ 자문위원회 ○ 세부 운영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의 ○ 평가계획의 수립 ○ 평가위원회의 운영 ○ 임기 등 ○ 간사 ○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전문가의 자문 등 ○ 수당 등 ○ 평가대상기관 ○ 평가신청의 취소 ○ 평가예정 통보 ○ 평가자료의 확보 ○ 평가실시 ○ 평가대상기간 ○ 평가등급 ○ 평가등급의 조정 ○ 평가결과의 공표 등 ○ 비밀의 유지

□ 입법례

○ 국 내

- 장기요양기관평가 : 서비스 제공 관련 구조·과정·결과 평가, 평가결과 공표 및 평가결과에 따른 비용가감지급 시행
 - * 장기요양급여 내용의 관리·평가에 초점
- 의료기관평가 : 의료기관별료 통보, 평가결과 공표
 - * 구조적 환경과 환자의 편의성에 초점
- 응급의료기관 평가 : 인력, 시설, 장비에 관한 법적 충족기준 평가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 특정영역 평가, 해당기관 통보, 평가결과 공표
- 사회복지시설평가 : 평가결과 공표, 우수시설에 대한 정부 표창

○ 외국의 입법례

【일 본】

- 목적
 - 사업자 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자기개선을로 서비스 질의 향상 도모
 - 서비스의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 운영주체 : 도·도부현에서 인증받은 “인증평가기관”에서 질 관리
- 평가방식
 - 사업자 자체평가 및 제3자 평가로 구분하여 질 관리 실시
 - 도·도부현별로 자체평가 및 제3자 평가의 지표기준 등이 상이

〈표 36〉 동경도의 제3자 평가방식

- 평가추진기구가 인증한 “인증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공표
- (인증평가기관) "도쿄도 복지서비스 평가추진기구(도쿄도 산하기관)"에서 인증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평가기관
- (평가자) 인증평가기관에 소속된 평가자는 추진기구에서 실시하는 평가자 양성 강습 및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추진기구) 평가기관 인증, 평가정보 제공 등 실시
- (평가결과공표) 고행자 연구복지진흥재단이 운영(도쿄도 재단법인)하는 “복지정보종합네트워크”에 공표

⇒ (시사점) 일본은 다보험자 체계 하에서 통일된 기준없이 도·도부현별로 제3자 평가방식으로 질 관리를 실시하며, 제3자 평가에 대한 강제성도 없음

- 실질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평가 없이 후생성 운영규정 준수여부 위주로 평가하며, 질 관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흡

【독 일】

- 목적 :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수발대상자 보호 강화
 - ※ 근거 : 수발보험법 제7장제80조, 제11장제112조(요양의 품질보장 기준과 원칙)
- 운영주체 : 국가가 별도로 위임한 MDK에서 질관리 담당
- 평가방식
 - 구조, 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2년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설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 기관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요양비용 삭감 또는 계약해지 가능

〈표 37〉 독일 품질관리 특징

담당기관	주요업무	업무행위	조사영역
보험자 (MDK)	지정	질평가	구조 / 과정
지자체	인허가	지도·감독	구조
			구조

○ 독일의 다보험자 방식에서는 여러 보험조합의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필요성으로 ‘축타의사 서비스’라는 기관이 수발보험 도입 이전부터 존재함

○ 1989년 질병보험법 발효시 대상자 등급판정과 기관의 질 관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축타의사 서비스’ 기관을 MDK로 확대 개편함

⇒ (시사점) 업무의 효율성 및 연계성측면에서 사업위탁 기관인 전담기구가 질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전담기구는 구조, 과정 중심의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인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

【미 국】

- 주정부가 장기요양 시설 인허가를 주고, CMS가 충족요건에 따라 Medicare & Medicaid 기관을 지정
- 기관평가(CMS)
 - 지도·감독(inspection) : Medicare & Medicaid 기관을 지정하는 연방정부(이하 'CMS')는 직접 지도·감독을 시행하지는 않고, 주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구조·과정'을 평가한 자료를 받아 공개함
 - 서비스의 질(quality) : 기관에서 청구시 제출하는 대상자의 자료를 분석하여 서비스 질의 '결과' 평가 자료를 공개함
- 민원관리
 - 주정부 :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기관의 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조사(complaints survey) 실시
 - CMS : 옴부즈맨 센터에서 보험료, 급여기준 등과 같은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들에 대해 처리하고 있음
- 부당청구관리 : 진료비 심사기관인 연방정부(이하 'CMS')는 주로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지불 전 심사 및 지불 후 심사를 통해 부당청구 및 진료비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

〈표 38〉 미국 품질관리 특징

담당기관	주요업무	업무행위	조사영역
연방정부 (CMS)	지정	지도·감독 결과분석	구조 / 과정 / 결과
주정부	인허가	지도·감독	구조 / 과정

⇒ (시사점) 부당청구 관리와 품질평가 업무의 연계

3) 평가기준·방법·절차 관련 쟁점 검토

□ 검토 항목

- 평가업무 수행체계
- 평가수행인력
- 평가 종류 및 주기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결과의 활용 범위

□ 평가업무 수행 체계

- 평가위원회 구성 검토

(1안) 평가수행기관에 평가위원회 설치

- 사회서비스 업무와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전담기구에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역할 :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공개범위 등의 심의·결정 권한 등 부여

* (사례) 장기요양기관평가 :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 심의

(2안) 평가수행기관과 평가위원회 분리

- 평가업무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수행 기관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공개범위 등의 심의 기구인 평가위원회를 분리

* (사례) 의료기관평가

- 평가주체인 복지부에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구성
- 보건산업진흥원(지표개발 등) 및 병원협회(평가수행)에 위탁

⇒ (검토 의견) 사회서비스 업무 수행 기관인 전담기구가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평가연계성 차원에서 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되, 피평가기관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담기구 내에 공무원, 관계전문가, 전담기구의 임·직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평가수행인력 검토

(1안) 전담기구 직원과 공무원으로 구성

(2안) 전담기구 직원,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3안) 관계전문가로 구성

⇒ (검토 의견) 평가수행인력 구성은 인력 동원의 실행성·효율성과 평가수행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정기평가는 현장 전문가 및 관련 교수 등을 활용하되, 수시 평가 업무는 전담기구 직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용역을 통해 수행

□ 평가 종류 및 주기

○ 평가대상 : 전체 제공기관을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전수평가

○ 평가종류 및 주기

- 정기평가 : 2~3년제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병행

- 수시평가 : 정기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유지여부 확인 및 민원다발 기관에 대해 예고 없이 실시

* 의료기관평가 및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도 정기 및 수시(확인)평가 실시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승인을 통해 평가지표를 평가실시 전년도 말 또는 평가실시년도 초에 사전 공개 후 전수 평가(일정규모 이하 제외) 실시

* 2006.4월 시행한 일본의 정보공표 제도 : 방문개호 등 9개 서비스기관의 전수평가를 통해 실시

○ 피평가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

□ 평가결과의 활용 등

- 평가결과를 피평가 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구 인터넷에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정보공개 적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 ... 평가정보의 단순 공표, 순위공표 등 적용 시기는 제공기관 간 서비스 질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평가지표 개발과 연계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표 39〉 평가기준 · 방법 · 절차 관련 제1안 입법례

관련	사회복지시설 평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평가
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p>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관련	사회복지시설 평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평가
시행령			
시행규칙	<p>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 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표 40〉 평가기준 · 방법 · 절차 관련 제2안 입법례

관련	의료기관 인증
법	의료법
법률	<p>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p>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률	<p>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관련	의료기관 인증
	<p>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④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p> <p>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p> <p>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제58조의5(이의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p> <p>③ 제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장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p>

관련	의료기관 인증
시행령	<p>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p>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시행규칙	<p>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 평가 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관련	의료기관 인증
	<p>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 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제 4 장

결 론

제4장 결 론

- 개정안의 목적은 이용권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여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현행법의 사회서비스 범주로 국한된다면 법제도하의 규정범위가 적어 복지부 사업 외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정의가 필요하며,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함
 - 관련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개정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가 정리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 시행초기 제도의 원활한 출범에 보다 비중을 두고 추진됨으로써, 중장기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미비함
 - 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 및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타 부처와의 연계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안)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에서의 사회서비스 내용 및 범주에 대한 내용, 서비스를 생산하는 제공기관의 권리와 의무, 이 서비스들에 대한 관리체계,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칙에서는 법률을 만들게 된 목적, 이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들에 대한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의, 국가와 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전체 6장으로 구성하며, 1장에서는 정의 부문에서 사회서비스 범위를 규정

하고, 2장에서는 사회서비스관리체계를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와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제공인력의 교육 및 훈련은 4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관한 장으로 이동하였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정산, 부당이득 징수업무 제30조제2항의 품질관리업무는 우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위법령 검토가 필요함
 - 부담비용 감면절차 및 방법 규정 개선,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서의 전담기구의 이용권 발급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 규정 보완
 - 사회서비스 이용계약 등 신설을 통하여 제공자와 이용자 간 사회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직접적 근거 마련
 - 제공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등록 및 변경 신고에서 등록 및 변경신고서의 시설 및 인력 항목 누락, 변경사항의 전담기구 송부 등 등록제 관리에 필요한 규정 마련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절차 규정 마련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의 내용·방법·절차 등에서 평가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 평가 기준 보완

- 또한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기본법으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처벌과 조사권은 법령에 명시해야 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본 법에서는 데이터 운용의 완화 규정을 두어 사업관리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두는 것도 바람직함

참고 문헌

- 곽정숙. 2009.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 자료집.
- 김운수외. 2007.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연구.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
- 김홍범. 2000.7. 은행감독과 중앙은행의 역할.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월례세미나, 35.
- 박길준외 . 2009.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 박광동. 2011.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법제연구원.
-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3.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 록

개정안 전문비교

개정안 전문비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장 총 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용권의 제공 및 이용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권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이용권의 오용·남용을 막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이용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함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회서비스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바우처의 생성소멸, 제공, 비용의 지불정산,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품질관리 등 전자바우처의 운영과 처리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①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이용권과 관련된 각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조 (국가 등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이용권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사회서비스의 개선 3. 발전적인 이용권 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이용권 수단간 편의증진 5. 오자·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이용권 서비스의 강화 6. 이용권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p>②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용권 관리정책에 협력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회서비스관리체계</p> <p>제5조(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 ①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육성기본계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p> <p>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조사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p> <p>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p> <p>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품질표준의 설정,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6.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투자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부터 5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이용권 제공계획(이하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종류 2. 이용권의 수량 및 형태 3. 발급대상자 4. 발급기준 5. 그 밖에 이용권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제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계획의 수립에 필요</p>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p>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p> <p>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p> <p>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p>	<p>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제공계획의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좌동</p> <p>제8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p> <p>제9조 (이용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용권 관리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권을 이용하여야 한다. <p>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조사의 방법, 절차 그 외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p> <p>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좌동</p>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p>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발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p>	<p>제12조(신청에 따른 조사) 좌동</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개 정 안
<p>이를 파기하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p> <p>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③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 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좌동</p> <p>제14조(이의신청) 좌동</p>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 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제공자 등록 등</p> <p>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5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좌동</p> <p>제1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기관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② 좌동</p> <p>제17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좌동</p> <p>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p> <p>제18조(제공기관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⑥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⑥ 제공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기관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범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기관이 될 수 없다. 범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p> <p>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제20조(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제공기관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1조(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①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p> <p>③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공기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p> <p>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개 정 안
<p>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p> <p>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p> <p>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p> <p>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p> <p>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p> <p>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p> <p>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不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p> <p>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p> <p>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p> <p>⑦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p> <p>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p> <p>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p> <p>제22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제00조에 의한 전담기관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공기관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4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기관이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5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개 정 안
<p>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p>	<p>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제공인력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기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7조(과징금처분) 좌동</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개 정 안
<p>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p>	<p>제2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기관(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9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p> <p>제30조(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활성화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의 이용권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업무 2. 사회서비스의 기준·규격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p>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자의 현황 2.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③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사회복지서비스의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권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유형 개발,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32조(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이용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이용권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3조(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관한 정보 공개)</p> <p>① (좌동)</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방법·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전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④ (좌동)</p> <p>제34조(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및 규격,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의 내용,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로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좌동</p>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p> <p>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p> <p>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p> <p>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p> <p>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p> <p>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p> <p>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p>	<p>제36조(비밀누설 금지) 좌동</p> <p>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좌동</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개 정 안
<p>수에 관한 사항</p> <p>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기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p> <p>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p>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38조(벌칙) 죄동</p> <p>제39조(벌칙) 죄동</p> <p>제40조(벌칙) 죄동</p> <p>제41조(벌칙) 죄동</p>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p>	<p>개 정 안</p>
<p>권리를 이전한 자</p> <p>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p> <p>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42조(양벌규정) 좌동</p> <p>제43조(과태료) 좌동</p>

